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1643번

○ 제 안 자 : 서윤기 의원 외 42명

○ 제 안 일 : 2020년 7월 13일

○ 회 부 일 : 2020년 7월 14일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소외계층’을 ‘취약계층’으로 함(안 제4조, 제8조 및 제1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2020.7.17. ~ 7.24.)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본 조례 중 차별적 표현인 '소외계층'을 '취약계층'으로 개정하여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발의되었음.

현 행	개 정 안
제4조(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략)	제4조(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① (생략)	제8조(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4. 취약계층 ----------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업) 진흥원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8조(사업)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 지원	7. 취약계층----------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 서울시는 인권친화적 정책 형성과 집행의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2년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1] 후 기본계획을 수립[2]하였고,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서울시의 자치법규에 대해 전수조사(인권영향평가[3], 2019년 7월 1일 기준, 860개)하여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62개 조례, 96개 조항에 대해 조례 개정을 권고[4]하였음.

※ **인권영향평가**(HRIA,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 정책(사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시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인권 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활동.

○ 본 조례의 3개 조항(제4조제1항제6호, 제8조제1항제4호, 제18조제7호)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외계층'이라는 용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정책의 대상으로 한정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이 용어를 사회적 낙인을 야기할 수 있는 차별적 표현으로 규정하고, '취약계층[5]'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음.

○ 「헌법」 제11조는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사회 공동체 내에서 개인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개인의 희망과 소양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인격권의 본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 구성원의 개인 간 차이를 존중하되, 차별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 용어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

1)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 2012.9.28., 조례 제5367호, 2012.9.28., 제정

2) 제1차 2013년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 계획(2013~2017)
제2차 2017년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 계획(2018~2022)

3) 서울연구원(2019),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서울연구원, 2019.11.

4) 서울시 자치법규 개정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2020.4.2.)

5) 취약계층의 정의 및 구체적 판단기준은 별첨1, 별첨2 참조

○ 다만, 서울시는 정책의 대상을 특정하여 예산 효율성 및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려는바, 사업 대상의 특정하는 용어를 변경(소외계층→취약계층)하려는 본 개정으로 인해 정책 또는 사업 대상의 축소 여지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소외계층'을 '취약계층'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용어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소외계층'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환경 등의 요인으로 인해 복지시설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말하며, 취약계층은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모든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어, 사전적으로는 용어의 범위 및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의 사전적 정의(국립국어원, 표준대국어사전)

- **소외(疏外)** 어떤 무리에서 기피하여 따돌리거나 멀리함.
- **취약(脆弱)** 무르고 약함.
- **소외계층(疏外階層)** 사회 일반 사회의 여러 복지 정책이나 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도움이 필요한 계층.
- **취약계층(脆弱階層)** 사회 일반 다른 계층에 비해 무르고 약하여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법령에는 소외계층에 대한 정의는 없고,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만 존재하여, 각각의 용어가 의미하는 대상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에는 '문화 소외계층'을 정의하고 있어, 이를 차용하여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이 각각 의미하는 대상을 비교해 보면, 유사하거나, 비슷한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고,
- 취약계층이 소외계층보다 폭넓은 대상을 포함하고 있어, 소외계층을 취약계층으로 개정할 경우 혜택에서 배제되는 시민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 법령상 정확한 정의가 없는 '소외계층'에서, 법령에서 대상을 특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법령상 문화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의 비교 〉

'문화적' 소외계층	취약계층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3조의2(문화소외계층의 범위)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 자활급여 수급자 –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보호대상자 –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 고령자 – 장애인 – 성매매피해자 –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 – 북한이탈주민 –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 – 부모가족 지원법의 보호대상자 – 결혼이민자 – 갱생보호 대상자 – 범죄 구조피해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용어의 적정성 〉

○ 소외계층을 취약계층으로 개정하도록 한 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인식조사 등 시민의견을 수렴하거나, 객관적인 근거로 조례 개정을 권고한 것은 아니며, 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 영어권에서 덜 차별적인 용어로 인식된다는 이유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우리말에서도 차별적 요소가 적을 것으로 단정하여 소외계층의 대체 용어로 취약계층을 제시하고 있는바,

- 소외계층을 취약계층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 단어의 적정성 여부, 개정 권고의 객관성 및 합리성 여부 등에 대해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쉬운 공공언어 쓰기 길잡이')은 소외계층이라는 용어를 '특정 계층에 대한 차별적 표현' 으로 소외계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삭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영어권에서 덜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소외계층(disadvantaged group 또는 marginalized group)보다 취약계층(vulnerable group)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점을 들어 ① 소외계층을 취약계층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② 소외계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음.

〈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의 권고 〉

예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할 것임. →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할 것임.

⇒ '소외 계층'은 특정 계층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

출처 : 쉬운 공공언어 쓰기 길잡이(문화체육관광부 · 국립국어원) 13p 발췌

〈 서울연구원의 용역결과보고서(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

(2) 소외계층 → 취약계층 또는 사용하지 말 것

- 소외계층은 영어의 disadvantaged group 또는 marginalized group 등을 번역하여 사용된 용어로 최근에는 차별적 의미가 강하다는 의미에서 취약계층(vulnerable group)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

-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사회·경제적·신체적 및 기타 조건으로 인하여 외적 개입을 통하지 않고서는 동등한 혜택을 제공받을 기회로부터 배제되기 쉬운 집단을 말하는 것으로, 이 역시 차별적 느낌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나 대안용어가 없기 때문에 소외계층 대신에 취약계층을 사용하거나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출처 : 서울연구원,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용역 최종보고서(2019.11) 35p 발췌

※ 권고의 객관성 및 합리성과 관련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조례개정 권고의 근거는 서울연구원의 인권영향 평가의 최종보고서(서울시 인권양향평가제도 운영)이며, 본 보고서는 인권 분야가 상대적 · 주관적 평가가 강한 분야로, 자의적 평가를 배제하고, 정부 부처와 국가 인권위원회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권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음.

〈 용어의 차별성 여부 〉

○ 셋째, 조례 개정을 통해 용어의 차별성을 해소 또는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정부와 서울시는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 등을 나타내는 용어에 차별적 표현을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그 대상도 경제적 기준에서 벗어나 다양한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변경된 용어에 대한 차별성에 대한 지적은 지속되어 왔음.

※ 용어의 차별성을 해소를 위한 용어변경

빈곤층 – 영세민 - 수혜자 – 수급권자 – 소외계층 - 취약계층 – ?

※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의 대상 변경

· 경제적 기준 → 경제적 기준 + 정치적·사회적 기준

· 예시) 가족구성원 관련 범위의 확대 : 저소득 가정 – 한부모 가정(모자가정, 부자가정, 미혼모가정)과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유형의 가정이 취약계층에 포함.

- 대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지 않으나,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차별적인 용어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단어의 변경만으로 차별적 표현을 해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차별적 표현의 대체용어 선정 : 차별적 표현 개정과 관련하여 대체 용어 선정은 차별적 표현의 대상이 되는 사람 또는 집단에서 바라는 표현을 수렴하여 개정할 필요는 없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언어 및 사회인식은 상호작용하여 변화하는 바, 언어의 변화는 인식 변화의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개정안와 같이 공공언어의 차별적 표현을 제거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은 사회적 인식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공공언어 :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사회의 구성원이 보고 듣고 읽는 것을 전제로 사용하는 언어를 통틀어 이르는 말. 각종 공문서, 대중 매체의 언어, 계약서·약관·사용설명서 등에 사용하는 언어가 이에 해당한다.

※ 차이 · 구별 · 차별 및 혐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主民,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 간 차이를 인식하여, 공공부조가 필요한 집단을 구별하고, 도움이 필요한 부류를 여건에 따라 차등 · 차별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정된 재원을 고려했을 때, 공공기관이 정책수립 시 차이 · 구별 · 차별은 불가피한 절차로 보여짐.

공공기관이 차이가 없음에도 주민을 구별하여 차별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이유 없이 주민을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요인으로 차별 또는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 경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혐오와 차별은 다른 것으로, 명백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묻지마 폭행 · 살인은 혐오하고, 근친결혼(近親結婚)과 동성결혼(同姓結婚)은 차별한다는 예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차별과 혐오를 혼용하거나 오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혐오로 인한 차별 확대'로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차이(差異)** 서로 같지 아니하고 다름. 또는 그런 정도나 상태.
· **구별(區別)**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남.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갈라놓음.
· **차별(差別)**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
· **혐오(嫌惡)** 싫어하고 미워함. 미워하고 꺼림. 싫어하고 꺼림.

○ 결론적으로, 소외계층을 취약계층으로 개정하는 것은 법령상 정의를 명확히 하고 대상을 확대하여, 특정된 대상에게 적정한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개정안으로 차별적 표현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으나, 공공언어 및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차이를 인정하여 존중하되, 차별을 배제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본 개정안과 같이 차별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 법 조 사 관	정 찬 일

별첨1.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별첨2.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제1호(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 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 단,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확인에 의한 소득판단은 지역가입자 제외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입영수증)를 통하여 저소득자 여부를 확인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실제 동거 및 부양 여부를 확인함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 소득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19년 3/4분기 가구 월 평균소득	1,887,791	3,424,735	5,255,306	6,004,259	6,438,949
60%	1,132,674	2,054,841	3,153,183	3,602,555	3,863,369
월 보험료 납부액	39,643	71,919	110,361	126,089	135,217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 '19년도 직장가입자보험료율(3.5%)

제2호(고령자) 만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 . 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경력단절여성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3호, 2019.1.1.)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 확인방법: 취업성공패키지(고용센터) 및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여성새로일하기센터-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 지정),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고령자인재은행), 학교밖청소년지원프로그램(여성가족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등
  - *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협조요청 하여 대상자 확인

제6호(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 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 ·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12호(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

*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민간 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포함)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 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력 조회 결과 취득기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 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 · 반장의 확인서 등)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 등급), 학교폭력 피해자, 학교밖청소년*, 중증질환자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8.7.17. 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적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 **확인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관련 경과규정: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금융채무 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 채용당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단, 인증 또는 취업당시에는 '저소득'자가 아니었으나, 해당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이후 '저소득자'가 된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예시) 일반근로자로 '18.5.1. 고용된 자가 '18.7.15. 고령자가 된 경우 '18.7.15. 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카. 보호종료 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류)된 아동 중 5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

☞ **확인방법: 보호종료확인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발급(보건복지부에서 자립수당 지급을 위한 사실관계확인 시 발급 중)**